

경운대학교 교직원포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교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관부서) 포상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

제3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업무유공자
 - 가. 공로상(표창장 또는 표창패) : 경운대학교의 발전에 공이 지대한 자
 - 나. 모범상(표창장 또는 표창패) : 교직원으로서 타인의 귀감이 된 자
 - 다. 정년퇴직자 포상(표창패) :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정년퇴직하는 자
 - 라. 감사패 : 본교직원 또는 외부인 가운데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
2. 발전안공모
 - 가. 최우수상(표창자 또는 표창패)
 - 나. 우수상(표창자 또는 표창패)
 - 다. 가작(표창자 또는 표창패)

제4조(포상의 방법) 포상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업무유공자
 - 가. 학교발전 및 업무유공(교수) 이사장상 및 상금
 - 나. 성실상, 친절상(직원) : 이사장상 및 상금
 - 다. 정년퇴직자 포상 : 이사장상 및 상금
 - 라. 감사패 : 총장상 및 상금
2. 발전안공모
 - 가. 최우수상 : 총장상 및 상금
 - 나. 우수상 : 총장상 및 상금
 - 다. 가작 : 총장상 및 상금

제5조(포상대상자의 추천) ① 공로상 및 모범상의 대상자가 교원일 때는 소속 학부장이, 직원일 때는 소속기관장(실처장, 각 학부장 및 대학원장, 부속·부설기관장)이 추천한다.

② 공로상 및 모범상의 추천서에는 반드시 공적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③ 교무처장은 정년퇴직예정 교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의 결정) ① 공로상·모범상 및 정년퇴직자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② 발전안공모는 총장이 임명하는 예비심사위원이 시상편수의 3배수로 추천하여, 본심에서 예비심사위원 심사결과 총점에 따라 60%이상 점수일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시상 편수를 선정한다.

제7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포상담당 직원이 된다.

제8조(포상의 시기)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한다.

1. 정기포상은 매년 시무식일에 한다.

2. 정년퇴직자 포상은 정년 퇴직일에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